

『유럽연합, 개인 정보 자동 처리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』 심층분석 보고서

2023. 08.

통보문서 번호	2023-3818	규제분야	정보디지털
통보국	유럽연합	HS Code	8471
작성기관	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	작성자 문의처	정다솜 031-428-5661

[목 차]

1. 규제 개요	1
2. 규제 제 · 개정 내용	2
3. 관련 법령 및 표준	11

1 규제 개요

□ 발표 내용

- 유럽 평의회(CoE)는 개인 정보의 자동 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223호에 대해 알림¹⁾

규제명	- 개인 정보의 자동 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, 협약, 1981년 - 개정 - (CoE 협약 108호의 현대화에 관한) 의정서 223호, 2018 -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, Convention, 1981 - Amendment - (on the modernisation of CoE Convention 108) Protocol No. 223, 2018
규제부처	- 유럽 평의회 (CoE) - Council of Europe (CoE)
요구사항 유형	기만적 관행 방지 및 소비자 보호
제·개정 상태	개정 최종안
WTO TBT 통보	미통보
고시일	2018년 10월 10일
채택일	2018년 10월 10일 (비준을 위한 서명 개시일)
의견수렴 마감일	해당 없음
발효일	- 모든 협약 당사국이 비준한 경우 : 모든 당사국이 비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, 또는, - 서명 개시일 이후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때(2023년 10월 11일) 최소 38개 당사국이 비준한 경우 : 즉시 발효 (비준 당사국 간)
준수 기한	해당 없음

□ 적용범위 및 수출규모

적용대상	- 데이터 - Data
HS Code	8471
對발행국 수출액 (천불)	125,209 (2022년 기준)

1) 관보 URL

<https://www.coe.int/en/web/conventions/full-list?module=treaty-detail&treatynum=223>

2 규제 제·개정 내용

□ 규제범위

- (적용 대상)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 정보 처리
- (예외 대상) 개인적·가정적 활동에서 수행하는 개인 정보 처리

□ 규제 개요

- (배경) 유럽 평의회의 개인 정보 자동 처리 협약(이하 ‘협약 108호’ 또는 ‘협약’)은 개인 정보의 수집, 처리, 저장, 보안 및 개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등에 관하여 회원국들 사이의 최소한의 표준을 설정함
- (개요) 유럽 평의회는 기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0월 10일 협약 108호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223호(Protocol 223)를 채택하고 비준을 위해 서명을 개시함
- (주요 개정사항) 주요 개정사항 및 의정서 223호에 따른 협약 108호 개정안 목차는 다음과 같음

주요 개정사항
- 비례성(과잉 조치 금지) 및 정보 최소화 원칙, 처리의 적법성에 관한 요건 강화 · 개인적·가정적 활동에서 수행하는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적용 예외 · 정보 처리의 합법성과 품질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규정 - 민감한 정보의 범주 확장 · 유전 및 생체 정보, 노동조합 가입 여부, 인종 및 출신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의 범주 확장 - 정보 침해에 대한 공표 의무 · 정보 위반에 대한 컨트롤러의 통지 의무 - 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대 · 컨트롤러의 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- 개인의 권리 강화 ·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하여, 알고리즘 결정에서 개인에 대한 새로운 권리 규정 - 컨트롤러(및 프로세서)의 책임 강화 · 협약 준수 의무 및 이에 대한 입증 의무 - Privacy by design* 원칙 적용

- 컨트롤러(및 프로세서)의 협약 준수를 위한 당사국의 조치 및 Privacy by Design 원칙 적용 규정
- * Privacy by design :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시 초기 설계부터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원칙

-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처리 활동에 대한 정보 보호 원칙 적용 요구

-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예외-제한을 둘 수 있음
(단, 어떤 경우에도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검토와 감독 필요)

- 국제 협력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정보 보호 기관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

-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자유 원칙 요구
(단, 상기 자유 원칙이 협약 규정의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특정 경우 등은 예외)
-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한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
- 감독 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기관의 권한과 책임 강화
- 감독 기관의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국제 협력의 법적 근거 강화

- 기타

- 당사국의 협약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 및 평가 협조 의무 등 강화
- 당사국의 적절한 기술적·조직적 조치 제공 의무 강화

의정서 223호에 의한 개인 정보 자동 처리 협약 (협약 108호) 개정안 목차

서문	제 V장 협력 및 상호 지원
제 I장 일반 조항	제 16조 감독 기관의 지정
제 1조 목적	제 17조 협력의 유형
제 2조 정의	제 18조 정보 주체에 대한 지원
제 3조 적용 범위	제 19조 보호 조치
	제 20조 요청 거부
	제 21조 비용 및 절차
제 II장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	제 VI장 협약 위원회
제 4조 당사국들의 의무	제 22조 위원회의 구성
제 5조 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정보의 품질	제 23조 위원회의 기능
제 6조 개인 정보의 특수 범주	제 24조 절차
제 7조 정보 보안	
제 8조 정보 처리의 투명성	제 VII장 개정
제 9조 정보 주체의 권리	제 25조 개정
제 10조 추가 의무 사항	
제 11조 예외 및 제한	제 VIII장 최종 조항
제 12조 위반에 대한 제재 및 구제 방법	제 26조 발효
제 III장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	제 27조 비회원국 또는 국제기관의 가입
제 14조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	제 28조 영토 조항
제 IV장 감독 기관	제 29조 예약
제 15조 감독 기관	제 30조 철회
	제 31조 통지

□ 적용 대상

- (적용 대상)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 정보 처리
- (예외 대상) 개인적·가정적 활동에서 수행하는 개인 정보 처리

□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

○ 당사국의 의무

- (조치 마련 의무) 각 당사국은 협약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당사국이 협약을 ‘비준 또는 가입’ 할 때 당해 조치가 발효되어야 함
- (평가 협조 의무) 협약 위원회가 당사국이 마련한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

○ 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정보의 품질

- (적법성 원칙) 개인 정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합법적 목적으로 수집·처리되어야 함
- (예외) 공익 목적,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 목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추가 처리는 적절한 보호 조치의 대상임

○ 개인 정보의 특수 범주

- 정보 주체 보호를 위해 특정 범주의 정보는 협약을 보완하는 보호 조치*가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됨

* 민감한 정보 처리가 개인에 미칠 수 있는 위험, 특히 차별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조치

· 유전자 정보
· 범죄, 형사 절차 및 유죄 판결 관련 보안 조치와 관련된 개인 정보
· 데이터 침해를 공표하는 의무
· 개인 고유 식별 생체 정보
· 인종 또는 민족, 정치적 견해, 노동조합 가입, 종교 또는 기타 신념, 건강 또는 성생활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개인 정보

○ 정보 보안

- (보안 조치 제공) 당사국은 컨트롤러(및 프로세서)가 개인 정보를

우발적이거나 무단으로 접근, 파괴, 손실, 사용, 수정, 또는 공개하는 위험에 대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제공해야 함

- **(협약 위반 통지)** 당사국은 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해 컨트롤러가 지체없이 관찰 감독 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해야 함

○ 정보 처리의 투명성

- **(정보 제공 의무)** 당사국은 컨트롤러가 정보 주체에게 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야 함

- 컨트롤러의 신원과 거주지 또는 시설
- 개인 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목적
- 처리되는 개인 정보의 범주
- 개인 정보 수신자 또는 수신자 범주 (해당하는 경우)
- 협약 제 9조(정보 주체의 권리)의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
- 정보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

- **(예외)** 특정 경우, 컨트롤러의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

- ① 정보 주체가 상기 관련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
- ②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
 - 정보 처리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

○ 정보 주체의 권리

- **(원칙)** 모든 개인(정보 주체)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

- ① 개인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 처리된 개인 정보에만 근거하여 개인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
- ② 정보 주체의 요청 시 합리적인 간격으로 과도한 지연이나 비용 없이 개인 정보 처리 사실 및 처리된 정보를 이해 가능한 형태로 통지받을 권리 (정보의 출처, 보존 기간, 및 투명한 정보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컨트롤러가 제공해야 할 기타 정보 포함)
- ③ 정보 주체의 요청 시, 정보 주체 자신에게 적용된 정보 처리 방식의 근거를 알 수 있는 권리 (해당 정보 처리 결과가 본인에게 적용된 경우)
- ④ 자신에 관한 정보 처리에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(단, 컨트롤러가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, 기본 자유보다 우선시 되는 정당한 처리 이유를 제시하지

않는 경우에 한함)

- ⑤ 정보 주체의 요청 시 과도한 지연이나 비용 없이 협약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처리된 개인 정보를 교정 또는 삭제할 권리
- ⑥ 본 협약에 의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때 구제받을 권리
- ⑦ 출신이나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본 협약에 의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감독 기관의 조력을 받을 권리

- **(예외)** ①의 경우 해당 결정이 컨트롤러가 준수하는 법에 따라 승인되고 그 법률이 정보 주체의 권리,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

○ 추가 의무

- 각 당사국은 컨트롤러(및 프로세서)가 정보 처리 시 본 협약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야 함

- 컨트롤러(및 프로세서)가 협약을 준수하고 각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감독 기관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
- 의도된 정보 처리가 정보 주체의 권리 및 기본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검토 및 이러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보 처리 과정 설계
- 모든 정보 처리 단계에서 개인 정보 보호 권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기술적·조직적 조치

* 상기 조치 등은 각 당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예외 및 제한

- **(원칙)**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에는 하기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 예외를 두지 않음

- 제 5조 4항 - 정보 처리의 적법성
- 제 7조 2항 - 컨트롤러(및 프로세서)의 감독 기관에 대한 통지 의무
- 제 8조 1항 - 컨트롤러(및 프로세서)의 개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
- 제 9조 - 정보 주체의 권리

- **(예외 · 제한 가능)**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처리 활동에는 협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예외와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함

○ 제재 및 구제

- 각 당사국은 협약 위반에 대해 적절한 사법적 및 비사법적 제재 및 구제책을 수립하여야 함

□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

- (원칙) 각 당사국은 개인 정보 보호만을 이유로 협약의 다른 당사국에 속하는 수령인에게 해당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별 허가를 요구하면 안 됨
- 수령인이 비당사국 관할에 속하는 경우 본 협약 기반의 적절한 보호 수준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개인 정보 전송이 가능함
- (예외)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로 함
 - ① 다른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전송이 협약 규정의 우회로 이어질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
 - ② 당사국이 지역 국제기구에 속한 국가들이 공유하는 조화된 보호 규칙에 구속되는 경우
- (특수한 경우)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, 특정 경우 개인 정보의 전송이 허용될 수 있음

- ① 정보 주체가 적절한 보호 조치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자유로운 동의를 표한 경우
- ② 정보 주체가 이를 필요로 하는 특정한 경우
- ③ 법으로 제공되는 주요 합법적 이익, 특히 중요한 공익이 이를 요구하고, 이러한 전송이 민주 사회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구성되는 경우
- ④ 언론의 자유를 위해 민주 사회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구성되는 경우

□ 감독 기관, 협력 및 상호 지원

○ 감독 기관

- (감독 기관 제공) 각 당사국은 협약 규정 준수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을 하나 이상 제공해야 함

- (권한 및 기능) 감독 기관의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

- 조사 및 개입에 대한 권한
- 정보의 전송에 관한 기능 수행 권한 - 표준화된 보호 조치의 승인
- 협약 조항 위반에 관한 결정 및 행정적 제재 부과 권한
- 법적 절차의 진행 또는 협약 조항 위반 사항을 사법 당국에 알릴 권한
- 감독 기관의 기능 및 활동, 정보 주체의 권리(특히 아동 및 기타 취약층의 개인 보호 권리) 및 그 행사에 대한 대중 인식 촉진
- 단, 사법적 권한을 행사할 때 기관들이 수행하는 정보 처리에는 권한이 없음

- (의무) 감독 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

- 개인 정보 처리를 위한 입법 또는 행정 조치 제안에 대한 의견 조정
- 정보 주체가 제기한 정보 보호 권리에 관한 요청과 불만 사항 처리 및 그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
- 활동 내용에 대한 주기적 보고
- 감독 기관의 구성원이 업무 중 접근한 기밀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

○ 협력 및 상호 지원을 위한 감독 기관의 지정

- (지정) 각 당사국은 협력 및 상호 지원 제공을 위해 감독 기관을 하나 이상 지정하고 이름 및 주소, 각 기관(감독 기관을 둘 이상 지정한 경우)의 권한을 유럽 평의회 사무 총장에게 제출해야 함
- (협력) 당사국의 감독 기관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협력해야 함

-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보 교환 및 협력, 상호 지원
- 조사 또는 개입의 조정, 또는 공동 조치 수행
-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관행에 대한 정보 및 문서 제공

○ 정보 주체에 대한 지원

- (원칙) 당사국은 국적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정보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
 - 정보 주체가 다른 당사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 지정 감독 기관의 중개자를 통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음
- (요건) 지원 요청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- 이름, 주소 및 요청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세부 정보

- 요청과 관련된 정보 처리 또는 컨트롤러
- 요청 목적

○ 보호 조치

- **(정보 사용 제한)** 요청에 수반되거나 자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감독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감독 기관은 명시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
- **(요청 제한)**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정보 주체를 대신하여 요청할 수 없음

○ 요청의 거절

- **(원칙)** 지원 요청을 받은 감독 기관은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음
- **(예외)** 특별한 경우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

- 요청이 감독 기관의 권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요청이 협약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요청에 응하는 것이 당사국의 주권, 국가 안보, 공공질서 또는 해당 당사국 관할 내 개인의 권리 및 기본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

○ 비용 및 절차

- **(비용)** 당사국의 협력 및 상호 지원, 정보 주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 - 단, 전문가·통역사에 관한 비용은 요청 당사국이 부담
 - 정보 주체는 다른 당사국 영역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해 해당 당사국 거주자가 합법적으로 내야 하는 것 외의 비용이나 수수료를 청구받지 않음
- **(절차)** 형식, 절차 및 사용 언어 등 지원에 관한 기타 사항은 관련 당사국 간에 직접 결정

□ 의정서 225호 채택 및 발효일

- **(채택일)** 2018년 10월 10일
- **(서명 개시일)** 2018년 10월 10일
- **(발효일)** 의정서 225호 발효 요건 및 발효일은 다음과 같음

① 모든 협약 당사국이 비준한 경우

- 모든 당사국이 비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

② 또는, 서명 개시일 이후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때 (2023년 10월 11일) 최소 38개 당사국이 비준한 경우

- 즉시 발효 (비준 당사국 간)

○ **(비준 현황)** 각 협약 당사국의 비준 현황은 다음과 같음

비준이 따르지 않은 서명 국가 수	19
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 수	27
* 상기 서명/비준 현황은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://www.coe.int/en/web/conventions/full-list?module=signatures-by-treaty&treatynum=223	

☐ 관련 법령

- 본 의정서는 아래 협약의 개정에 관한 내용임
 - CETS 108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(Strasbourg, 28, 1, 1981)